

# 정기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기이사회 회의(진행: 이형 사무처장)

1. 일 시 : 2014. 02. 19(수) 17:00~

2. 장 소 : 학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회의실

3. 참석자 : 총 9명(이사6명, 감사2명, 자문위원1명)

4. 회의순서 및 내용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회순채택

○ 이사장 인사

○ 의안채택

○ 전차 회의록 낭독

○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결

-제2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기타안건

○ 폐회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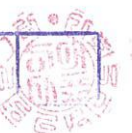
사회복지  
법 인 열린가람

515 - 82 - 04858

포항시 북구 칠성로 47번길 4(선재빌딩)

이 사 장 김 지 찬

054 - 247 - 6355



## 의 정 사 항

### ○ 성원보고

총 8명의 이사 중 참석 6명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었기에 이사회 개최 성원이 구성됨.

### ○ 개최 / 회순채택

지금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정기이사회를 개최함. 아울러 회의 회순을 이사들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채택함.

### ○ 이사장 인사(의장) / 의안채택

의장(김지찬(난승스님) 이사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법인 및 산하시설 2013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안),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기타안건과 관련하여 이사들의 의견을 요청함. 의안 심의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의 동의와 제청으로 제1호, 2호 및 기타의안을 채택함.

### ○ 전차회의록 낭독

이형 이사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모든 이사들이 이에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을 전달하여 김종학(희안스님) 이사와 정필재 이사가 전차회의록에 서명 날인함.

### ○ 감시보고

- 김홍년 감사 : 2013년 감사보고는 특별히 지적할 사항 없이 집행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였으며, 결산 및 회계처리는 적절하였음을 설명함.

- 김명조 상임이사 : 산하기관별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함.

- 이형 이사 :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지도점검결과 받았던 주의사항과 그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설명함.

- 정필재 이사 : 관리소홀 및 서류 미비 등의 미약한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법인의 이미지가 지금보다 더 상향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감사보고에 대해 정필재 이사의 동의와 함께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가결함.

○ 의안 심의

※ 제1호 의안 :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의결의 건

- 이형 이사 : 본 사안은 먼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업실적 및 결산(안)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함.

- 김명조 상임이사 :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송도 무료급식소에 대한 설명을 요함.

- 이형 이사 : 포스코의 지정기탁을 받아 송도동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대상자는 180명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봄이 되면 대상자가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 조정을 할 예정임.

- 이형 이사 :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이 당초 사업계획에 근접하게 이루어 졌으나 연말에 여러 개의 사업이 몰리기도 하고 시장형사업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수익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활의 경우 실적이 원활하지 않으면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거의 100프로에 가깝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 김종학(희안스님) 이사 : 감사보고에 의거하여 사업과 결산이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고,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제안 내용과 금액에 큰 변동이 없어 특별히 수정하거나 재검토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정필재 이사 :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에 이외에 수정하거나 재검토 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제1호 의안에 대해 정필재 이사의 동의와 함께 김명조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결의함.

※ 제2호 의안 :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의결의 건

- 이형 이사 : 법인 운영규정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관

리안내, 표준취업규칙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운영규정을 조금 개정하였고 취업규칙의 수당부분에 삭제 내지 수정을 원함.

- 박기흠 이사 : 운영규정이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전년도에 개정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개정이라 사료됨으로 수정을 권함.

- 제2호 의안에 대해 박기흠 이사의 동의와 함께 정필재 이사의 제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박수와 함께 결의함.

#### ※ 기타의안

- 이형 이사 : 본 법인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2014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2014년도 직원급여지급기준표를 작성하고 1급의 경우 법인 내 자체신설하며 본 법인 종사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먼저 배부된 유인물의 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직원 상여.수당 지급기준표의 내용대로 수정을 원함.

- 김종학(희안스님) 이사 : 임금 관련 사항은 한 번 결정되면 철회하기 힘든 사안이기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을거라 생각되며 향후 법인 조직과 직원들의 사기 충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참석이사 전원 박수로서 원안대로 통과됨.

#### ○ 폐회

- 의장(김지찬(난승스님) 이사장) :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4년 법인 정기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이사님들과 위원님, 감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일심으로 전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정기이사회 폐회를 선언함.

## 【 결 의 사 항 】

1. 2013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아래 및 별첨과 같이 승인 가결 함.

구 분		세 입				세 출			
		2013 예산 (A)	2013 결산 (B)	증감(B-A)		2013 예산 (A)	2013 결산 (B)	증감(B-A)	
				액수	비율 (%)			액수	비율 (%)
합 계		8,313,325	8,327,741	14,416	0	8,313,325	7,639,827	-673,498	-8
법인	소 계	904,420	911,390	6,970	1	904,420	701,990	-202,430	-22
	법인	904,420	911,390	6,970	1	904,420	701,990	-202,430	-22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소 계	1,917,166	1,901,817	-15,349	-1	1,917,166	1,836,661	-80,505	-4
	노인요양시설 정애원	1,917,166	1,901,817	-15,349	-1	1,917,166	1,836,661	-80,505	-4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소 계	1,099,103	1,095,917	-3,186	-0	1,099,103	1,008,112	-90,991	-8
	학산종합 사회복지관	1,099,103	1,095,917	-3,186	-0	1,099,103	1,008,112	-90,991	-8
포항지역 자활센터	소 계	2,703,300	2,730,193	26,893	1	2,703,300	2,532,661	-170,639	-6
	포항지역 자활센터	2,703,300	2,730,193	26,893	1	2,703,300	2,532,661	-170,639	-6
포항시니어클럽	소 계	324,703	324,713	10	0	324,703	317,109	-7,594	-2
	포항시니어클럽	324,703	324,713	10	0	324,703	317,109	-7,594	-2
노인요양시설 선재원	소 계	461,663	481,473	19,810	4	461,663	424,885	-36,778	-8
	노인요양시설 선재원	461,663	481,473	19,810	4	461,663	424,885	-36,778	-8
선재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소 계	370,938	366,809	-4,129	-1	370,938	335,185	-35,753	-10
	선재재가노인 지원서비스센터	370,938	366,809	-4,129	-1	370,938	335,185	-35,753	-10
가람재가노인 지원센터	소 계	314,490	314,512	22	0	314,490	284,124	-*30,366	-10
	가람재가노인 지원센터	314,490	314,512	22	0	314,490	284,124	-*30,366	-10
학산어린이집	소 계	217,542	200,917	-16,625	-8	217,542	199,100	-18,442	-8
	학산어린이집	217,542	200,917	-16,625	-8	217,542	199,100	-18,442	-8


2. 법인 운영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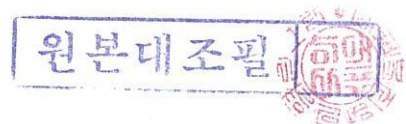
개정 전(구문)	개정 후(신문)	개정사유
<p>취업규칙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남빈동 413-7번지에 둔다.</p>	<p>취업규칙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u>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칠성로 47번길 4(선재빌딩)</u>에 둔다.</p>	<p>도로명주소 반영</p>
<p>제4조(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유지·수행한다. 1.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2.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3. 지역자활센터 수탁 운영 4. 보육시설 수탁 운영 5. 노인주간보호센터 수탁 운영 6.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수탁 운영 7. 시니어클럽 수탁 운영 8. 소규모요양시설 수탁 운영 9. 그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p>	<p>제4조(사업의 종류) ① 본 법인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유지·수행한다. <u>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u> <u>2.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u> <u>3. 자활지원센터 수탁운영</u> <u>4.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u> <u>5. 시니어클럽운영</u> <u>6. 보육시설수탁운영</u> 7.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u>가. 해외사회복지사업</u></p>	<p>산하시설 운영 상황 및 신규사업 반영</p>
<p>제15조(임원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p>	<p>제15조(임원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u>8인</u>(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p>	<p>상위규정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반영</p>
<p>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p>	<p>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u>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한다.</u></p>	<p>상위규정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반영</p>
<p>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p>	<p>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③ <u>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한다.</u></p>	<p>상위규정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반영</p>
<p>제17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p>	<p>제17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u>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p>상위규정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반영</p>



개정 전(구문)	개정 후(신문)	개정사유
<p>제28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를 개최시 반드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p> <p>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p> <p>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p>	<p>제28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u>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u></p> <p>③ <u>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u></p>	<p>상위 규정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표준취업규칙) 반영</p>
<p>제39조(수당)</p> <p>직무수당, 식비·교통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회계수당, 직책수당, 복지수당, 체력단련수당, 효도수당, 가족수당, 기술수당, 통신수당, 조정수당 등으로 하고 매년 임금 산정시 적용범위를 정하고 삭제 내지 추가할 수 있으며, 특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이 법정사항일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 한다.</p>	<p>제45조(수당) <u>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출산장려수당, 식비·교통비보조, 장기근속수당, 조정수당, 가족수당, 종사자수당, 회계수당, 복지수당, 효도수당, 통신수당 등으로 하고 매년 임금 산정시 적용범위를 정하고 삭제 내지 추가할 수 있으며, 특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다만, 그 지급기준이 법정사항일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u></p>	<p>수당종류 및 삭제 추가</p>

3. 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직원 급여지급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 함.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5급(을) /6급갑	기능·고용직, 요양보호사, 별정직 연봉계약체결자
1호봉	2,698	2,373	2,111	1,876	1,797	1,624	 <p>▶기능·고용직, 요양보호사 : 시설장 자율에 의거 임금기준 마련 적용</p> <p>▶별정직, 연봉계약 체결자 : (기준직급(3,4급)) 시설장 자율에 의거 임금기준 마련 적용</p>
2호봉	2,742	2,417	2,159	1,905	1,851	1,660	
3호봉	2,791	2,466	2,208	1,955	1,907	1,713	
4호봉	2,844	2,519	2,257	2,006	1,943	1,768	
5호봉	2,889	2,564	2,299	2,057	1,998	1,821	
6호봉	2,967	2,642	2,370	2,143	2,073	1,892	
7호봉	3,076	2,751	2,470	2,240	2,148	1,960	
8호봉	3,188	2,863	2,576	2,339	2,219	2,024	
9호봉	3,301	2,976	2,684	2,435	2,286	2,106	
10호봉	3,414	3,089	2,788	2,529	2,347	2,164	
11호봉	3,522	3,197	2,888	2,619	2,381	2,218	
12호봉	3,608	3,283	2,969	2,692	2,446	2,233	
13호봉	3,689	3,364	3,045	2,760	2,510	2,292	
14호봉	3,765	3,440	3,116	2,826	2,570	2,349	
15호봉	3,838	3,513	3,186	2,889	2,628	2,403	
16호봉	3,906	3,581	3,250	2,949	2,684	2,455	
17호봉	3,971	3,646	3,312	3,006	2,736	2,507	
18호봉	4,032	3,707	3,370	3,061	2,787	2,555	
19호봉	4,090	3,765	3,426	3,112	2,835	2,602	
20호봉	4,144	3,819	3,478	3,161	2,882	2,646	
21호봉	4,196	3,871	3,528	3,208	2,926	2,689	
22호봉	4,244	3,919	3,575	3,252	2,968	2,729	
23호봉	4,290	3,965	3,619	3,295	3,009	2,768	
24호봉	4,333	4,008	3,661	3,336	3,048	2,805	
25호봉	4,374	4,049	3,702	3,374	3,085	2,840	
26호봉	4,412	4,087	3,739	3,411	3,121	2,872	
27호봉	4,446	4,121	3,775	3,442	3,151	2,900	
28호봉	4,477	4,152	3,805	3,471	3,180	2,926	
29호봉	4,505	4,180	3,834	3,499	3,207	2,952	
30호봉	4,533	4,208	3,862	3,526	3,233	2,977	
31호봉	-	-	3,887	3,551	3,259	3,002	





4. 2014년도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직원 상여.수당지급기준표를 아래와 같이 승인 가결 함.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관리업무수당 (직책보조비 삭제)	기관장	기본급*9%	매월		자부담 및 법인전입금 으로 지급
자가운전 보조비	기관장	20만원 이내	매월		예산 범위 내 지급
식대	직원		매월	100,000원	
가족수당	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부양의무자와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수에 따라 지급	매월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세부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체계 참조
효도휴가비	직원	지급시기마다 기본급의 60%	연2회 (설날, 추석)		입사일이 3개월이상자 지급
시간외근무수 당	직원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중간관리자 1명, 회계직 1명 (12시간) -그 외(8시간 이내)

-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운영규정, 열린가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참조하되 각 산하시설 사정에 맞게 조정한다.
- 연말성과금을 기본급의 100% 이내에서 법인과 협의 후 각 산하시설 사정에 맞게 지급할 수도 있다.
-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국.공립에 한정)을 법인전입금으로 분기별 지급한다.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후 출산장려수당 1,000,000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 노인요양시설 사무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2014 년 02 월 19 일

###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이 사 장 김 지 찬



이 사 김 명 조



이 사 김 중 학



이 사 박 기 흠



이 사 정 필 재



이 사 이 형

